

[별표 13] <개정 2000.4.18>

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

구 분	지 급 대 상
· 일반직공무원 · 외무공무원 · 별정직공무원	· 3급 또는 3급상당(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을 제외한다) 및 4급 또는 4급상당공무원
· 연구직공무원	·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2 제1호가목 내지 다목 및 동표 제2호가목·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
· 지도직공무원	·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2의2 제1호가목·나목 및 동표 제2호가목·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
· 국가정보원직원	· 4급 또는 4급상당이상
· 경찰공무원	· 총경이상
· 소방공무원	· 소방정이상
· 교육공무원	·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에 의하여 특1호봉 내지 특4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· 대학 또는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 또는 병원의 과장이상의 직에 보직된 공무원 · 교육장 및 시·도 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· 4급상당이상의 직에 보직된 장학관·교육연구관 ·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의 장

비고: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